

종합대출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담보대출 거래는 고객님의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담보” 또는 “채권/파생결합증권담보” “집합투자증권담보” “주식매도대금”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주식담보용자란 위탁 계좌에 예탁된 상장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채권/파생결합증권 담보용자란 고객 위탁 계좌에 예탁된 상장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집합투자증권 담보용자란 집합투자증권(펀드)를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주식매도 담보대출이란 매도된 예탁 증권을 담보로 매도결제일 전까지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담보대출 거래는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담보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속지필요사항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대출거래가 가능한가요?

·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대출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대출거래 가능 여부는 홈페이지, H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대출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i) 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Q4. 대출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기본 대출기간 단위로 만기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시가 1만원 A주식 1천주 담보로 600만원 주식담보대출 하였으나, 주가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140% 가정)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주식담보대출	10,000원	10,000,000원	166%	-
D일	7,500원	7,500,000원	125%	담보유지비율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90만원 담보부족)
D+1일				반대매매 실행

* 반대매매 수량 = $\frac{900,000}{(6,380 \times 1.4) - 7,500} = 629$

☞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중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 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평가비율 = 계좌평가금액/대출금

☞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7,5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3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629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629주)이 6,4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403만원(629주×6,4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90만원)의 4.5배 수준

☐ 민원 · 상담 · 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anwhawm.com>)고객센터>소비자보호광장>전자민원접수 또는 고객센터(080-851-8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

1. 종합대출설명서 개요
2. 대출 약정
3. 대출 신청
4. 대출금의 상환 및 연장
5. 담보의 관리
6. 신용정보 평가관련 유의사항
7. 청약의 철회
8. 위법 계약의 해지

1. 종합대출설명서 개요

본 설명서는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종합대출 약관에서 정한 예탁증권담보용자(주식담보, 채권/파생결합증권담보, 집합투자증권담보)와 주식매도담보대출에 대해 회사가 별도 정하는 내용과 대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내용
주식담보용자	위탁 계좌에 예탁된 상장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채권/파생결합증권담보용자	고객 위탁 계좌에 예탁된 상장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집합투자증권담보용자	집합투자증권(펀드)를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주식매도담보대출	매도된 예탁 증권을 담보로 매도결제일 전까지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2. 대출 약정

종류	가능 고객	대상 계좌
주식담보용자	내국인 실명 개인 내국 법인	위탁계좌
채권/파생결합증권담보용자	내국인 실명 개인 내국 법인	위탁계좌
집합투자증권담보용자	내국인 실명 개인 내국 법인	집합투자증권 계좌
주식매도담보대출	내국인 실명 개인 내국 법인	위탁계좌

- 1) 내국인 실명 개인, 내국 법인에 한하며 당사 내 1인 다수 계좌에 대해 약정이 가능합니다.
- 2) 계좌의 소속 영업점 또는 인터넷, HTS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대출약정 할 수 있고, 대출 약정은 고객의 해지 전까지 유효합니다.

가. 영업점을 통한 약정의 경우

- 개인계좌는 본인이 직접 약정을 해야 하며(미성년자 약정 불가), 대출약정신청서,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인감이 필요합니다.
- 법인계좌는 대출약정신청서(거래인감 날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 영업점에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인터넷 또는 HTS 등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온라인(인터넷, HTS 등)을 통한 약정의 경우

- 고객이 직접 약정을 신청하면, 당사에서 신용정보 조회 후 우선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약정을 승인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한 경우에도 영업점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3) 부실거래자와 채무불이행자는 대출약정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4) 대출 약정 시 고객이 대출 최고 한도를 정하며 대출 약정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심의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5) 대출 약정금액 구간[표3]에 따른 수입인지대금을 회사와 고객은 50:50의 비율로 부담하며, 대출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 회사는 인지세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대출 신청

종류	대출 가능 금액	대출 기간
주식담보용자	대출 대상 주식 전일 증가 50% ~70% - 일반형 : A군 65%, B군 60%, C군 55%, D군/E군 50% ※ 대출 가능한 해외주식 종목 : C군 적용 - 매매형 : 70%	90일
채권/파생결합증권 담보용자	• 채권 : 국공채 및 신용평가등급 AAA채권은 대출 대상 상장채권의 전일증가와 시가평가 가격 중 작은 가격을 기준으로 70%, 국공채 및 신용평가등급 AAA채권 이외의 경우 60% • ELS : 대출대상 파생결합증권(ELS)의 환매 예상금액의 70% , 원금비보장형은 대출불가	90일
집합투자증권담보용자	대출 대상 집합투자증권 평가금액의 공사채형 (MMF포함) 70%, 채권혼합형 65%, 주식혼합/주식형 60%, 주가연계펀드 50%	90일
주식매도담보대출	매도대금(수수료/세금 제외)의 98%	매도결제일 까지

※ 매매형 주식담보용자

- 국내주식 담보대출 외 채권/파생결합증권/집합투자증권/해외주식 담보대출 및 신용용자 잔고 보유 계좌는 매매형 담보대출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며, 국내주식 담보대출 보유 시 담보비율 150% 이상인 경우만 매매형 담보대출 서비스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매매형 담보대출계좌의 출금가능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70%입니다.
 - 매매형 담보대출 종목의 경우 만기연장은 원 담보비율이 140% 이상인 경우 만 가능합니다.
 - 매매형 대출 시 담보징구 순서는 ‘A군 → B군 → C군 → D군 → E군’ 순 이며, 종목군이 동일할 경우에는 종목코드 빠른 순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 1) 고객은 대출 대상 계좌 소속 영업점(방문, 전화) 또는 회사 온라인거래서비스(홈페이지, HTS 등)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약정시 정한 대출 최고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대출 금리

- 대출금리는 보유 기간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 자산 및 수익 기여도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는 정기이자의 경우 매월 첫 영업일에 후취하며, 중도 상환의 경우 상환시에 징수합니다.
- 이자를 1개월이상 연체시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고객에게 적용되는 만기내 보유 기간별 이자율 중 최고금리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P)을 합산하여 최대 연11%에서 결정됩니다.)
- 전월 미납분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해서 발생한 대출이자미납연체료는 $\text{대출원금} \times (\text{연체율} - \text{대출이율}) \times \text{일수}(\text{실행일} \sim \text{결제일까지, 한편넣기}) / 365(\text{윤년의 경우 } 366)$ 로 징수합니다. ("예수금 \geq 이자미납 + 연체료" 일 경우에만 변제처리)

3) 대출의 제한

가. 대출 불가 계좌

- 미수금, 이자미납 및 기타 미납 내역, 미수유가증권 발생 계좌
- 예수금보다 위탁증거금이 큰 계좌
- 담보비율이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만인 계좌
- 질권 설정 또는 기타 사고 등록 계좌
- 휴대폰 미등록 고객

나. 대출 불가 금융투자상품

- 주식 : 당사 증거금률 100% 종목, 관리, 감리, 투자유의 종목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일부 종목
- 채권 : 2개 이상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이 BBB 미만인 회사채 (BBB인 경우는 회사 심사 후 대출 가능하며, CB 및 BW의 경우 대출 시 담보받는 수량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됨)
- 파생결합증권 : 원금비보장형 ELS 및 DLS
- 집합투자증권 :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금지된 집합투자증권, 목표달성율 지정 펀드, 일부인출이 되지 않는 펀드의 같은 계좌 내 추가 대출

4. 대출금의 상환 및 연장

종류	상환 방법
주식담보용자	현금상환, 매도상환
채권/파생결합증권 담보용자	현금상환, 매도상환, 자동상환
집합투자증권담보용자	현금상환, 매도상환
주식매도담보대출	자동상환

- 1) 현금 상환 : 대출 만기일 이전에 일부 또는 전액 현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가능 금

액은 대출 계좌 출금 가능 예수금에 한하며, 집합투자증권담보유자의 경우 약정시 지정한 계좌의 출금 가능 예수금으로 상환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감자, 합병, 분할, ISIN변경 TICKER코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현금상환이 제한 됩니다.

- 2) 매도 상환 : 담보 주식/채권 매도대금,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 대금 또는 집합투자증권 환매 대금으로 대출금 및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자동 상환 : 담보 파생결합증권의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발생 시 자동으로 대출금 및 대출 이자가 상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 4) 만기 통보 및 연장 : 회사는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일 7영업일 전에 만기 상환을 통보하며, 고객은 종목군 한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투자성향 및 신용상태, 담보예탁증권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5) 미상환대출금 발생계좌 임의상환 정리

가. 예탁증권 담보대출금이 상환기일(만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 시가단일가 매매(해외주식은 해당 해외시장의 정규장 시작 직후) 시간에 해당 담보증권을 자동 반대매매(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환매 청구)를 통하여 임의상환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전일 종가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이 산정됩니다

다. 임의상환 처분 순서는 “자동 현금상환 → 미상환대출금 종목” 순이며, 미상환대출금 종목 전량 결제 후 상환금액일 부족한 경우, 현금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라. 해외주식 미상환대출금 발생으로 인한 임의상환 대상 종목의 미체결주문은 21시 일괄 취소됩니다.

5. 담보의 관리

1) 담보평가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4-2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가. 주식 : 당일종가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 해당종목은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용유자, 주식담보대출, 현금주식
거래정지종목	거래소 대응가 '0' 인 종목 → '0' 으로 평가 거래소 대응가가 '0' 이 아닌경우 →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의 순으로 평가
관리/정리매매	'0' 으로 평가 (거래소 대응가 없음)
투자위험/경고종목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 투자위험/경고종목은 거래소 대응가 '0' 이어도 담보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참고] 거래소 대응가가 '0' 인 경우

- 관리종목/정리매매종목
- 자진 상장폐지신청으로 거래정지가 된 종목
- 투자위험/경고종목
- 상장폐지실질심사(거래소, 코스닥 실질심사규정) 대상(예상) 종목으로 거래정지된 종목
- 기타 거래소가 대응가를 '0' 으로 정하는 경우

2) 담보유지비율 및 상환일

종류	담보유지비율	상환정리일
주식담보용자	140%	D+1일(130%미만인 경우) D+2일(130%이상인 경우)
채권/파생결합증권 담보용자	- 해외주식 담보용자 보유 시 : 170% - 매매형 담보용자 이용 시 : 150%	D+2일
집합투자증권 담보용자	140% ※ 담보유지비율 별도 적용 펀드 (영업점 확인요망) - 주가연계펀드(기초자산별) - 레버리지펀드(레버리지 비율별) -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과 환매대금 지급 일이 특정 기준일을 초과하는 펀드 등	D+2일
주식매도담보대출	-	결제일

D : 담보부족발생일

1) 담보 비율의 산정

가. 주식(해외상장주식 포함)담보용자, 채권/파생결합증권 담보용자

- 실질잔고(D+2일 예상잔고)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계좌 내의 타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해외주식 대출잔고를 보유한 계좌에 한해 보유중인 외화예수금과 대출가능한 해외주식을 원화로 환산한 평가금액이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담보비율은 매 영업일 16시 10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집합투자증권담보용자

- 계좌 내 대출잔고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합산하여 매 영업일 1회 평가합니다.

2) 회사의 종합대출(신용공여 포함)의 담보유지비율은 140% 이며, 해외주식 대출잔고 보유 시에는 담보유지비율을 170%로 상향하여 적용하며 매매형 담보대출 이용 시에는 담보유지비율을 150%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의한 경우 140% 이상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3) 담보를 평가 함에 있어 유상, 무상, 청약, 합병, 회사분할 등의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당해 권리도 담보로 인정 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 중 회사가 선정한 대출가능 한 종목에 한해 담보로 인정합니다.
- 4) 고객은 담보비율 미달 시 회사가 전화 등을 통해 요구하는 추가 담보를 요구일 포함 1일(휴장일 제외) 이내에 제공해야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영업일(휴장일 제외) 이내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담보부족 발생계좌 임의 상환정리
 - 가. 회사가 요구하는 담보의 추가납입요구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채무상환 요구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때에는 반대매매(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환매 청구)를 통해 임의 상환 정리를 할 수 있으며, 담보 유지비율이 130%이상인 경우 추가 담보요구일 포함 2영업일 경과 후 전일종가대비 하한가로 수량이 산정되고 담보유지비율이 130%미만인 경우 추가담보요구 일 전일종가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이 산정됩니다.
 - 나. 해외주식 종목은 담보유지비율 130% 여부와 상관없이 전일종가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임의상환 수량이 산정 됩니다.
 - 다. 반대매매 실행 후 담보유지비율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보없이 다음 영업일에 연속으로 임의상환이 실행되며, 이 경우 하한가로 임의상환 수량이 산정됩니다.
 - 라. 임의상환 처분순서는 ‘자동현금상환 → 신용융자주식 → 신용대주주식 → 국내주식 담보대출 → 해외주식 담보대출 → 채권 담보대출 → ELS 담보대출’ 순이며, 신용공여 유형 내에서는 ‘대출일자 빠른 순 → 종목 코드 빠른 순’ 으로 반대매매 합니다.
 - 마. 임의상환 처분순서 변경은 처분일 오전 8시 50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 감자 등의 제권리가 발생되거나 담보교체가 있는 경우, 요청한 종목으로 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외주식 종목은 처분순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 해외주식 담보부족으로 인한 임의상환 대상 계좌의 매도상환 미체결주문은 21시 일괄 취소됩니다.

[표 1] 대출 약정 및 금리

구분	주식담보 파생결합증권 담보	채권담보	집합투자 증권 담보	주식매도 담보	
대출 대상	개인/법인	개인/법인	개인/법인	개인/법인	
약정 한도	20억원			20억원	
대출 이자 (연 %)	*보유기간별 체차 적용			8.5%	
	대출 기간	적용금리	기준금리 (CD91일물)		가산금리
	1~30일	7.3%	1.99%		5.31%
	31~90일	8.1%	1.99%		6.11%
	91일 이상	8.8%	1.99%	6.81%	

※ 연금저축계좌내 집합투자증권대출 : 3.2%

[표2] 신용공여 종목군 한도

구분	대출 한도
A군	20억원
B군	10억원
C군	5억원
D군	2억원
E군	1억원

※ 종목군은 당사가 개별 주식의 위험도 등을 정기(6개월마다 변경) 또는 수시 평가하여 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목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용공여 한도는 매입/대출 시 한도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변경된 종목군에 따라 새로운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은 미국 내 3대 증권거래소인 AMEX, NYSE, NASDAQ 상장주식 중 시가총액과 시장거래대금 순위를 동일 비중으로 합하여 상위 300개 종목을 대출가능종목으로 선정합니다. 해당 선정 종목 중 순위가 하락하여 상위 300개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출불가종목으로 변경되며, 이로 인해 담보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매형 담보대출 서비스 신청 시, 계좌에 보유중인 종목 현황에 따라 신용공여 불가 종목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경우 1억원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표3] 인지세표

대출금액	인지세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6. 금융소비자의 권리

1) 신용정보 평가관련 유의사항

- 1) 고객은 신용공여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신용공여한도, 담보유지비율, 신용 보증금율, 선물옵션 매매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4)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5) 신용공여의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4)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약관 ·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경우 **담보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종합대출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대출**

○ **담보종목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일반 대출기준과 별도로 심사과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여부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 및 계열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등기임원 포함)은 증권담보대출의 약정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종합대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화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아래 주요내용을 **차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출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② 담보대출금 미상환시,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추가 금액 미납 시 등의 경우 **반대매매**가 일어나며, **단기간에 주식가치가 급락(담보증권 평가하락 등)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③ 연체 시 **연체이자**가 발생되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신규·만기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본인은 한화투자증권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hanwhawm.com>)고객센터(소비자보호광장)전자민원접수) 또는 고객센터(080-851-8282)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담보유지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거래시 용자로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당해 신용거래 용자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대용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매주문 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거래소에 납입할 때 거래소가 정한 비율 이내에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반대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용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 																		
소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p><예시></p> <table border="1"> <tr> <td>~7일까지</td> <td>7%</td> <td>~30일까지</td> <td>8%</td> <td>~90일까지</td> <td>10%</td> </tr> <tr> <td>이자기산일 (9.4)</td> <td>7일 경과 (9.11)</td> <td>30일 경과 (10.3)</td> <td>50일 경과 (10.24)</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td> <td> 총 이자 = 684,932원 </td> </tr> </table>	~7일까지	7%	~30일까지	8%	~90일까지	10%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총 이자 = 684,932원
~7일까지	7%	~30일까지	8%	~90일까지	10%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총 이자 = 684,932원														
체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p><예시></p> <table border="1"> <tr> <td>이자기산일 (9.4)</td> <td>7일 경과 (9.11)</td> <td>30일 경과 (10.3)</td> <td>50일 경과 (10.24)</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td> <td> 총 이자 = 593,151원 </td> </tr> </table>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총 이자 = 593,151원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총 이자 = 593,151원														
단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p><예시></p> <table border="1"> <tr> <td>이자기산일 (9.4)</td> <td>7일 경과 (9.11)</td> <td>30일 경과 (10.3)</td> <td>50일 경과 (10.24)</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td> <td> 총 이자 = 479,452원 </td> </tr> </table>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총 이자 = 479,452원						
이자기산일 (9.4)	7일 경과 (9.11)	30일 경과 (10.3)	50일 경과 (10.24)																
					총 이자 = 479,452원														